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형사법 OX 문제풀이(2)



| 최정훈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18.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져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한다. ()
19.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기대가능성은 없다. ()
20.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
21.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대가능성을 부정하였다. ()
22.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23.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2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서 행위자를 기준으로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25. 강간을 하기 위하여 골목길로 난 피해자의 방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도주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26.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영딩이를 더듬었다면 실해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27.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받은 경우 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28.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 가옥을 방화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방화한 때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이다. ()
29. 피고인이 주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0. 강간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만둔 둔 경우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
31.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주어 마시게 하였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1명이 술을 토하자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쓸어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는 중지미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32.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3.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34.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지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운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 정답 및 해설 】

[정답]					
18	19	20	21	22	23
O	X	X	○	○	○
24	25	26	27	28	29
X	○	X	X	○	X
30	31	32	33	34	
○	○	○	○	○	

18. [해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책임 고의는 성립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견해이다.
엄격책임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9. [해설]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대판 1987.7.7, 86도1724)

20. [해설]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21. [해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7.1.20, 86도874).

22. [해설] 대판 1999.7.23, 99도1911

23. [해설] 대판 1992.8.14, 92도1246

24. [해설]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7.15, 2004도2969).

25. [해설]

신체의 일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대판 1995.9.15, 94도2561).

26. [해설]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영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0.5.25, 90도607).

27. [해설]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29. [해설]

'거실로 들어가 두리번거리고' 즉 물색행위가 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판 2003.6.24, 2003도1985).

30. [해설] 대판 1993.10.12, 93도1851

31. [해설] 대구지법 1975.12.3, 75노502

32. [해설] 대판 1992.7.28, 92도917

33. [해설] 대판 1999.4.9, 99도424

34. [해설] 대판 2011.11.10, 2011도10539